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564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564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349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 항소인 1.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우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3490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8,1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1행의 ‘앞서 본 증거와 예’를 ‘앞서 본 증거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강창호, 판사 구성훈